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9. 11.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3년 9월 3일

나. 제 출 자 : 김용범 의원 외 4인

다. 회부일자 : 2013년 9월 5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 9. 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용범 의원)

가. 제안이유

- 일자리 감소와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인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시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구청장에게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
- 협동조합 활성화와 지원 등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 ~ 안 제8조)
- 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 활성화 및 자립을 위한 경영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 협동조합 제품의 우선 구매와 민간기업, 대학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2조)
-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활동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 기 영)

- 이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해당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부터 제8조까지에 지원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협동조합 지원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음.
 - 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3조에서는 경영지원, 교육훈련지원, 재정지원,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동조합의 자생력 제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협동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와 민간기업, 대학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협동조합 활동의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 본 조례안은 공동체에 의한 자치적 경영모델로 시장경쟁체제에서의 소득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고 공생·발전할 수 있는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부각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2013년 8월 1일

자로 개정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등 신고 및 관리 업무”가 자치구로 위임된 시점에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경제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구의 협동조합 설립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

○ 참고로 2013년 8월 31일 기준 우리구에서 관리중인 협동조합은 총 50개소 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8
----------	-----

발의년월일 : 2013년 8월 일

발 의 자 : 김용범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일자리 감소와 사회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인 협동조합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시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에게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협동조합 활성화와 지원 등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안 제4조 ~ 안 제8조)

- 다. 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 활성화 및 자립을 위한 경영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안 제10조)
- 라. 협동조합 제품의 우선 구매와 민간기업, 대학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2조)
- 마.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활동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협동조합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 다. 합 의 : 일자리정책과
- 라. 자치법규안 : 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구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6.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정 확보,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등의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와 제2항의 교육훈련을 민간단체나 협동조합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에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2.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동조합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

② 구청장은 사무의 민간위탁 시 협동조합등의 참여를 우선 장려 하고,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협동조합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협동조합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대학·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협동조합등의 지원·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3조(홍보 등) 구청장은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협동조합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등에 대한 인식 확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에 대하여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